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5. 1. 24.(금)

자료문의 : 공판1과  
전화번호 : 02-3480-2360  
주책임자 : 공판1과장

### 제 목

## 2024년 12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4년 12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6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

- ① 숙박업소 사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인 주차관리인을 시켜, **재개발 관련 분쟁 중에 있는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여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인에 대한 화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범행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관리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4회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 항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서울고검]**
- ② 친부 A가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건 재판에서 배우자 B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하여, 피해자와 B 사이의 카톡 메시지·녹취록 등을 토대로 B로부터 위증 자백을 이끌어내고, A와 B 사이 통화녹음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가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내어, A를 위증교사로, B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사례 [대전지검]
- ③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였던 C를 소주병으로 때린 특수상해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연인 D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린 적이 없고, C 혼자 넘어졌다'**고 허위증언하여,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C와 D가 위증한 정황을 확인하고, C, D로부터 위증 자백을 받아 인지·기소한 사례 [춘천지검]
- ④ 갑, 을 명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 재판에서,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한 법무사 E가 **'근저당권설정 계약 당일 갑, 을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허위증언하여, 갑, 을의 수사기관 진술·증언과 E의 증언을 비교분석하고, 갑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 경위를 따져 묻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E의 위증을 밝혀내어 E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사례 [수원지검]
- 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상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지인인 목격자 F, G가 **'피고인은 팔이 붙잡혀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다'**라고 허위증언하여, 피해자 및 다른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1심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고, 위증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한 F를 체포영장으로 검거 후 F, G로부터 위증 자백을 받아 인지·기소한 사례 [군산지청]
- ⑥ 피고인이 중식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재판에서, 1심 증인인 목격자 J는 **'범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고, 항소심 증인 피해자 H는 **'내 상처는 중식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목격자 I는 **'피고인과 H가 싸우는 것조차 몰랐다'**고 허위증언하여, 112 및 119 신고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I, J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등 H, I, J의 허위증언을 밝혀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사례 [대구지검]

[첨부: 공판우수사례 선정 내역]

| 순<br>번 | 소 속          |  | 공판우수사례  |
|--------|--------------|--|---|
|        | 부 장          |  |   |
|        | 주임검사         |  |   |
| 1      | 서울고검<br>공판부  |  | <p><b>【공소유지 우수사례】</b> 지적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을 시켜 건물주를 살해한 숙박업소 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항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업소 사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인 주차관리인을 시켜, 재개발 관련 분쟁 중에 있는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항소심 재판(1심 징역 27년)</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항소심 재판에서, 약 25권에 이르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인에 대해 3시간 동안 화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고,</li> <li>○ 범행 현장, 흥기 판매처 등을 방문하여 주차관리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담당 경찰관, 빌딩 관리인, 인근 주민 등을 면담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4회에 걸친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였고,</li> <li>○ 결심 공판에서 범행 현장의 거리뷰, 현장약도 등을 설명하는 등 피고인의 살인교사 범행을 효과적으로 현출하여 피고인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li> </ul> |
|        | 강성용<br>(31기) |  |   |
|        | 김정호<br>(29기) |  |   |
| 2      | 대전지검<br>공판부  |  |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b> 친부가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친부의 교사에 따라 친모가 위증한 사례</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부 A가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모인 B가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딸이 B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친딸과 B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B로부터 위증 자백 및 피교사 진술을 이끌어내고,</li> <li>○ A와 B 사이 통화녹음 분석, B 주거지 압수수색, A에 대한 출정조사 등을 통해 A의 위증교사 사실까지 밝혀내어,</li> <li>○ A를 위증교사로, B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하여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1개월간 위증사범 12명 인지·기소</p>  |
|        | 최정민<br>(37기) |  |   |
|        | 정규록<br>(변12) |  |   |

| 순<br>번 | 소 속          | 공판우수사례  |
|--------|--------------|---|
|        | 부 장          |   |
|        | 주임검사         |   |
| 3      | 춘천지검<br>형사2부 |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전처와 피고인의 현재 연인이 피고인의 범행 은폐를 위해 위증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의 사실혼 전처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현재 연인 D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C를 때린 적이 없고 C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의 교도소 접견녹취록 2달 분량을 분석하여, 피고인과 D가 연인 관계인 사실, C와 D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증언한 정황을 파악한 후,</li> <li>○ C의 진료기록, 구급활동일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C에게 발생한 상처가 소주병으로 인한 상처임을 명확히 밝히고,</li> <li>○ 접견녹취록,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C와 D에 대한 면밀한 추궁을 통해 위증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 낸 뒤 위증으로 인지·기소함으로써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1개월간 위증·무고 사범 등 9명 인지·기소</p> |
|        | 홍승현<br>(35기) |   |
|        | 오세현<br>(변12) |   |
| 4      | 수원지검<br>공판부  |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사가 부실한 업무처리를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이 갑, 을 명의 위임장 위조 후 법무사 E에게 제출하여 갑, 을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 재판에서, E가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일 갑, 을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사 E는 평소 철저한 업무처리를 강조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일 갑, 을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li> <li>○ 갑, 을의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과 E의 증언을 비교분석하고, 갑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 경위를 따져 묻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li> <li>○ 법무사 E의 위증 혐의를 명확히 하고 위증으로 인지·기소함으로써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2개월간 위증사범 8명 인지·기소</p>                             |
|        | 김은경<br>(36기) |   |
|        | 나상현<br>(변5)  |   |

| 순<br>번 | 소 속          | 공판우수사례  |
|--------|--------------|---|
|        | 부 장          |   |
|        | 주임검사         |   |
| 5      | 군산지청<br>형사1부 |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상해 사건에서 지인인 목격자들이 위증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p>○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상해 사건 재판에서, 지인인 목격자 F, G가 ‘피고인은 팔이 붙잡혀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다’라고 허위증언한 사건</p>   |
|        | 김재성<br>(36기) | <p><b>선정 이유</b></p> <p>○ 피해자 및 다른 참고인 진술, 현장상황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사실을 입증하여 1심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번의 자백하게 하고,</p>  |
|        | 김명섭<br>(변10) | <p>○ F, G에 대한 위증수사를 개시하자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F를 체포영장으로 검거한 후,</p> <p>○ F, G를 순차 조사하여 범행 자백을 받아 위증으로 기소하는 등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p> <p>※ 3개월간 위증사범 7명 인지·기소</p>  |
| 6      | 대구지검<br>공판2부 |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누범기간 중인 지인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단체로 위증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p>○ 피고인이 중식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H는 ‘내 상처는 중식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목격자 I는 ‘피고인과 H가 싸우는 것조차 몰랐다’, 목격자 J는 ‘주위 사람이 알려준 대로 119에 신고한 것이고 범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한 사건</p> |
|        | 곽계령<br>(37기) | <p><b>선정 이유</b></p> <p>○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 수행 중 최초 112 및 119 신고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여 1심 증인으로 출석한 J의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p>  |
|        | 이가희<br>(변8)  | <p>○ 피해자 H와 목격자 I가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 후 피고인을 위해 허위증언하자,</p> <p>○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H, I, J를 면밀히 추궁하여 I, J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위증으로 인지·기소함으로써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p>  |